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32,573,019	36,977,191
일반회계	1,114,599,769	33,437,993
특별회계	117,973,250	3,539,198
공기업특별회계	105,520,695	3,165,621
상수도사업	45,933,632	1,378,009
하수도사업	59,587,063	1,787,612
기타특별회계	12,452,555	373,577
의료급여기금	2,728,164	81,8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07,500	9,225
밀양담주변지역지원	245,628	7,3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7,472	4,424
수질개선관리	5,229,910	156,897
중소기업육성자금	3,092,737	92,782
공공폐수처리시설	701,144	21,03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66,189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9,5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